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구 미 시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1.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2021년 5월 「낙동강 파크골프장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 구미시설공단 위탁 운영이 가장 효과적으로 판단되고
- 2022년 3월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2021년 6월 2일 제정·공포)
- 시설 운영·관리에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하고 생활체육 복지증진을 위해 파크골프장 운영관리의 구미시설공단 위탁 추진

2. 주요내용

- 위탁재산 현황

- . 시설명 : 파크골프장(구미 파크골프장 외 6개소)
- . 위치

명칭	소재지
구미 파크골프장	구미시 고아읍 괴평리 1123번지 낙동강 둔치 일원
동락 파크골프장	구미시 진평동 947-31번지 낙동강 둔치 일원
양호 파크골프장	구미시 양호동 607-2번지 낙동강 둔치 일원
고아 파크골프장	구미시 고아읍 예강리 695-1번지 낙동강 둔치 일원
선산 파크골프장	구미시 선산읍 원리 1057-26번지 낙동강 둔치 일원
해평 파크골프장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 1095-34번지 낙동강 둔치 일원
도개 파크골프장	구미시 도개면 궁기리 829-1번지 낙동강 둔치 일원

- . 면 적 : 283,400m²
- . 사 업 비 : 7,800백만원(국 1,940, 도 920, 책 300, 시 4,640)
- . 주요시설
 - 컨테이너 7개, 카라반 1개, 화장실 18개, 정자 27개, 파고라 19개
 - 관정 14개, 그늘막 6개, 콤프레셔 5개 등
- 위탁업무 :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전반
-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 2026. 12. 31.(5년)
- 수탁기관 : 구미시설공단

3. 운영 소요예산 : 연 1,413백만원 정도

(단위 : 천원)

계	인건비 (A)	시설유지비 (B)	일반관리비(C) [(A+B)*0.6]	부가가치세(D) [(A+B+C)*0.1]	비고
1,412,891	1,023,591	188,151	72,704	128,445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
-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4조, 제5조, 제6조
-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5. 참고사항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구미시설공단 위탁 시 운영비 지원에 따른 세출 발생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낙동강 파크골프장 운영비

구분		금액	비고
인건비	직접인건비	1,023,590,817	근무인원 38명 기준 (총괄 1, 팀장 5, 운영 7, 시설 5, 조경 8, 환경 7, 기타 5)
	소계	1,023,590,817	
경비	보험료	101,407,474	
	복리후생비	32,529,384	
	전력비	8,115,071	
	가스수도비	2,916,663	
	수리수선비	5,478,934	
	소모품비	9,927,540	
	지급수수료	27,036,296	
	경비 소계	188,150,927	
순운영비 (인건비+경비)		1,211,741,744	
일반관리비		72,704,504	순운영비 × 6%
운영비 소계		1,284,446,248	
부가가치세		128,444,624	운영비 소계 × 10%
총계		1,412,890,872	연간 위탁 비용

○ 낙동강 파크골프장 사용료 수입

구분	비율(%)	인원(명)	사용료(원)	금액(원)	비고
구미시민	27	61,560	4,000	246,240,000	
구미시민	63	143,640	2,000	287,280,000	감면(65세 이상 등)
구미시민 외	3	6,840	8,000	54,720,000	
구미시민 외	7	15,960	4,000	63,840,000	감면(65세 이상 등)
합계	100	228,000		652,080,000	

3. 비용추계의 결과

구분		시설공단	비고
수입액(a)	사용료 수입	652,080,000	
지출액(b)	공단위탁금 (운영비)	1,412,890,872	
연간수익액(a-b)		△ 760,810,872	

4. 재원조달 방안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시비(운영비)	706,445,436	1,412,890,872	1,412,890,872	1,412,890,872	1,412,890,872	6,358,008,924
합 계	706,445,436	1,412,890,872	1,412,890,872	1,412,890,872	1,412,890,872	6,358,008,924

5.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파크골프장 이용객 수 변동에 따른 사용료 수입 변동과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상승에 따라 재정소요액이 변경될 수 있음.

6. 작 성 자

- 체육시설관리과 수변체육시설계 차영동(☎4918)

사진대지

□ 위치도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개정 2015.1.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7.2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2013.6.21>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미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 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파크골프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파크골프장 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단 또는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③ 파크골프장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구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소관 부서		체육시설관리과
입 안 자	과 장	이 민 수
	담 당	최 희 현
	담 당 자	차 영 동 (480-4918)